

**붙임****심사기준 개선 건의 관련 회신 [전체]**

학회 연번	1	검토부서	심사운영실 외과심사부
건의처	제출처		세부학회
	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		-
학회의견	○ ECMO 급여기준 중 다발성장기부전에 대한 해석 차이 및 심사자간 편차 존재		
검토결과	<p>○ 심사조정내역 통보 시 심사조정 사유(원인) 및 근거(관련기준) 등이 명시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. 향후 ECMO심사 시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※ [별첨] 참조</p> <p>○ 또한, ECMO 급여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의사례를 공개 ("24.9.30.)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* (확인경로) 심의사례공개 - <a href="https://www.hira.or.kr">https://www.hira.or.kr</a> &gt; 제도·정책 &gt; 보험인정기준 &gt; 심의사례공개</p> <p>○ 아울러, 관련 급여기준(고시 제2020-194호)의 명확화를 위하여 기준개선 추진 중으로 개정(안)은 의견조회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		

학회 연번	2	검토부서	심사운영실 외과심사부
건의처	제출처		세부학회
	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		-
학회의견	<p>○ 우측은 개흉, 좌측은 흉강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로 접근이 다르므로 인정 필요</p> <p>- 학회 추가제출사례 검토결과 최소침습 수술 등에 좌심방이 폐쇄술 조정 등 건의확인(사례 17건)</p>		
검토결과	<p>○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(고시 제2015-158호, '15.9.7.)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미로수술 예정환자, 항응고제 사용이 불가한 비판막성 심방 세동 환자에게 최소침습수술로 시행시 안전성·유효성을 인정받은 행위입니다.</p> <p>○ 귀 학회에서 제출된 사례 검토결과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은 최소침습적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되었고, 관혈적 수술과 동반 시행되는 경우 일부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</p> <p>○ 이에, 학회 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좌심방이폐쇄술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의학적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사례와 논의결과를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* (확인경로) 심의사례공개 - <a href="https://www.hira.or.kr">https://www.hira.or.kr</a> &gt; 제도·정책 &gt; 보험인정기준 &gt; 심의사례공개</p>		

□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: 금기증, 적응증 등 조정사유 명확화

○ 금기증

기 존

**【조정내역】** 심사위원 자문결과, ECMO 시술료 및 치료재료비용이 금기대상에 해당되므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.

**【관련기준】**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의학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자문결과에 따라 심사하고 있습니다.

개 선

**【조정내역】** 심사위원 자문결과, [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] 및 [치료재료]가 [금기증]에 해당되어 심사조정되었습니다.

**【조정사유】** 제출된 자료 참조, 진행된 식도암 환자에게 시행한 ECMO는 시행 당시 이미 lactic acid= 17.3, 면역기능저하(ANC= 0-65), 신부전이 악화된 MOF 상태로 확인되어 심사조정되었습니다.

**【관련기준】*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94호 "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, ECMO)의 인정기준"(2020.9.1.시행)